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899,046,506	26,971,395
일반회계		873,663,804	26,209,914
특별회계		25,382,702	761,481
	기타특별회계	25,382,702	761,481
	상수도	18,914,782	567,443
	의료급여기금	1,833,875	55,016
	자활기금	2,309,350	69,281
	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	137,586	4, 128
	주민소득지원기금	2,187,109	65,613

- 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 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-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392,654천원으로 한다.
- 제 5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6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,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- 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, 특별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성립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.